
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

☐ 관련근거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8조

☐ 추천의뢰: 자원순환과-6269(2025. 7. 4.)

- ☐ 추천사유: 위원 사임(홍지광 의원)에 따른 재추천 요청
→ 마포구의회 의원 1인 추천 필요

☐ 임기: 2024. 8. 1. ~ 2026. 7. 31. (2년)

- ※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

☐ 주민지원협의체 역할

-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
-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
-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

☐ 추천위원(안)

① 백남환 의원